

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개선(안)

‘13. 2.



- '81. 12월 산안법 제정 당시 근로자 및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 의무로 규정(법 제23조, 제24조)
 - (근로자교육) 신규채용·작업내용 변경·유해위험작업시 교육으로 한정하다가 '90.1. 정기교육 추가, 교육기관 지정
 - (관리책임자교육) 관리책임자·관리자·보건담당자 교육, '90.1. 사업주·관리감독자·안전담당자·산업보건의, 96.12. 건설지도요원 추가

근로자 교육(제31조)	관리책임자 등 교육(32조)
▶제정('81.12월): ①신규채용·작업내용 변경, ②유해위험작업시 교육(제23조) ▶'90.1월: 근로자 정기교육, 교육기관 지정·위탁 신설(1~5항) ▶'95.1월: 지정취소 규정을 부령→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▶'00.1월: 지정·취소기준을 “대행기관 절차”와 동일 규정(6항 신설) ▶'10.6월, '11.7월: 장관이 실시→고용부령으로 일부조문 변경	▶제정('81.12월): ①관리책임자, 관리자 및 보건담당자, 법인·단체에서 대행 ▶'90.1월: 사업주·관리감독자·안전담당자·산업보건의·대행기관종사자를 <u>추가하고, 안전·보건관리자 구분</u> ※'97.4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안법상 안전보건교육 면제 - '98.8월 동 면제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부활

- 규제완화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교육규정의 폐지·부활되고,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
 - '97년 특조법에 의해 산안법상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었다가 '07년에 동법 개정으로 면제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교육 부활
- 반면, 산재 형태를 보면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예방 가능한 사고가 많음
 - '11년 사망재해자(조사대상 1,196명) 중 61.1%(731명)가 작업절차 미준수·보호장구 사용 부적절·작업자 실수 등에 의해 발생
 - 안전보건교육은 산재예방활동의 필수적인 요소이며, 교육성과는 사업주의 관심과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여부에 따라 결정
 - ※ 산업재해 예방대책: ①기술적대책, ②교육적 대책, ③관리적 대책
- 따라서 현행 안전보건교육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



□ 교육종류 · 대상

- (사업내 교육) 사업장내 일반근로자를 대상, 사업장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
- (직무교육) 사업장내 조직상 직책을 가진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, 외부 교육기관에서 실시

구분	교육구분	교육시간	방법	교육강사	교육내용(교재)
사내 교육 (31조)	근로자	신규채용시	8h(일용 2h)	▶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 실시 ▶ 사내 인터넷 교육	▶ (자체)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, 안전보건관리자, 강사과정 이수자, 지도사, 강사교육 이수자 ▶ (위탁)위탁·대행기관, 비영리법인, 훈련기관
		정기교육	6h/분기 (사무/판매직 3h)		
		작업변경시	2h(일용 1h)		
		특별교육	16h		
	관리감독자	16h/년			※안전공단 홈페이지 교육자료 편집 사용
직무 교육 (32조)	관리책임자	신규 6h, 보수 6h/2년	▶ 직무교육기관	직무교육기관 강사	안전공단에서 직무교육교재 제작 배포 ※기관별로 재편집
	안전보건관리자	신규 34h, 보수 24h/2년	▶ 인터넷(법정교육시간의 3/2 이내, 관리책임자는 전체)		
	재해예방기관종사자	보수 24h/2년			

□ 교육기관

- (사내교육기관)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교육을 위탁 받아 실시

※ 법 제31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의10 : ①직무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기관②비영리 법인 또는 안전보건대행기관③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④석면조사기관④작업환경측정기관⑤건강진단기관⑥면허교육기관⑦안전보건진단기관⑧산업안전보건공단⑨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⑩안전보건관련학과 설치대학

- (직무교육기관) 안전·보건관리책임자, 안전·보건관리자, 재해예방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

※ 법 제32조제3항 및 시행령 제26조의14: ①산업안전보건공단②산업안전협회 ③산업보건협회 ④산업간호협회⑤산업위생학회⑥건설안전기술협회⑦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⑧인천대산학협력단⑨건설기술교육원⑩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⑪중앙안전보건협회('11. 12월 현재)

* 안전공단은 집체교육 없이 인터넷 교육만 실시(인터넷 교육은 안전공단, 안전협회만 실시)



① 교육대상별 명확한 교육목표 미흡

- 교육종류별 특성에 맞는 교육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시간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는 등 문제

② 사업장 현실과 괴리된 교육방식

①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

- 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교육 미비
 - 100인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없어 산재예방에 필요한 정보 등의 전달체계 부재
- 1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,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은 특조법에 의해 '97년 폐지되었다가 '07년 부활되었으나 실효성 미흡
 -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경영문제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공장장급인데 실무자급 내용을 교육함에 따라 수강의지 저하
 - (집체교육) 업종·규모 및 위험요인 등이 다른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편성
 - * 사업장 자체적으로 직무교육기관에 의뢰, 호텔에서 모기업 및 사내 하청기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
 - (인터넷 교육) 교육내용 및 시간이 주로 영세기업 책임자에 맞는 수준으로 중·대기업 관리책임자의 관심을 끌기에 역부족
 - * 공장장 격에 맞지 않는 저급한 교육방식으로 인식되어 다른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 조장

② 관리감독자 교육

-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를 지휘·감독하는 직책을 가지나 ‘직무교육’이 아닌 근로자교육(‘사업내교육’)을 받도록 규정
 - 교육내용이 근로자를 지휘·감독하는 데 필요한 특화된 내용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
- (외부기관 교육) 내용·방식이 사업장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효과가 미흡하므로 주로 대행기관이 실시하거나, 중·대기업은 자체 실시
 - 업종·직종의 구분이 없고, 교육대상자의 경력·이력 등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이론 위주의 집체교육 실시
- (인터넷 교육) 사내 전산망에 의한 경우만 인정되고 인터넷용 교육자료 등이 미흡하여 실효성 의문

③ 근로자 교육

- (신규채용시 교육) 신규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고 포괄적인 사항을 교육함에 따라 실무 활용성이 낮음
 - 법령에 규정된 내용만 교육하고 현장 투입한 후에 관리감독자가 별도 교육하거나, 신규직원이 수가 많지 않은 경우 집체교육 대신 자료로 대치
- (정기교육) 생산활동을 중단하고 장시간 교육을 할 수 없어 작업 전·후 단시간 교육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, 단시간 교육은 법상 교육으로 불인정
- (작업내용변경시 교육) 변경작업 관련 사항만 교육하면 되나, 교육내용은 신규채용시 교육과 동일하고 교육시간은 2시간으로 단축(신규는 8시간)

- **(특별교육)** 교육대상(38개 위험작업) 1개당 교육시간이 과도(16시간), 근로자 1인당 여러 작업이 해당되는 경우 법적의무 충족 어려움
 - ※ 조선, 화학, 건설업종의 경우 모든 생산 근로자들이 특별교육대상이고 약 5~10개 작업이 해당
-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실시하나 해당되는 모든 작업을 교육할 능력이 부족하고 작업별 표준화된 교육교재가 없는 실정
- 신규채용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특별교육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발생

④ **안전·보건관리자 교육**

- 실무에 활용 가능한 양질의 교육을 원하지만 직무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및 방법이 부실하여 수강 후 불만
 - 최초 선임된 교육생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내용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싶어 하지만 교육기관은 기초이론만 교육
 - 보수교육은 자신의 경력·업종·직종에 맞는 실무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나 교육기관은 수강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통합하여 이론교육 반복
- ※ 대기업 안전보건관리자는 법정 직무교육 이수 후 별도로 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전문화교육 과정을 수강

⑤ **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교육**

- 민간기관 소속직원의 업무능력향상 교육을 국가의 법정 강제 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상존
 - * 건설공사 수급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·예방조치 방법 등을 지도하는 업무수행, 현재 약 80여개 지도기관에 총 547명 종사
- 신규직원이 아닌 경력자가 대상인데 2년마다 동일한 이론교육을 반복하고, 교육내용에 비해 교육시간이 과다
 - * 지도기관 근무 개시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 24시간 의무 이수

③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교육제도 미비

- 조선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업 재해자 비중도 급증('82년 0.9%→'11년 31.9%)
 - * '82년에 비해 현재 서비스업 사업장은 121배('82년 3,454개소→'11년 1,064천개소), 근로자는 11배('82년 206천명→'11년 6,393천명) 증가
 - 재해자수는 24.8배('82년 1,197명→'11년 29,736명) 증가
- 서비스업 재해는 추락·협착·절단 등 단순 반복형 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교육이 절실하나 교육 대상에서 제외
 - * 넘어짐(38.3%), 떨어짐(10.6%), 절단(10.1%), 감김·끼임(9.5%) 순

④ 사업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기관 부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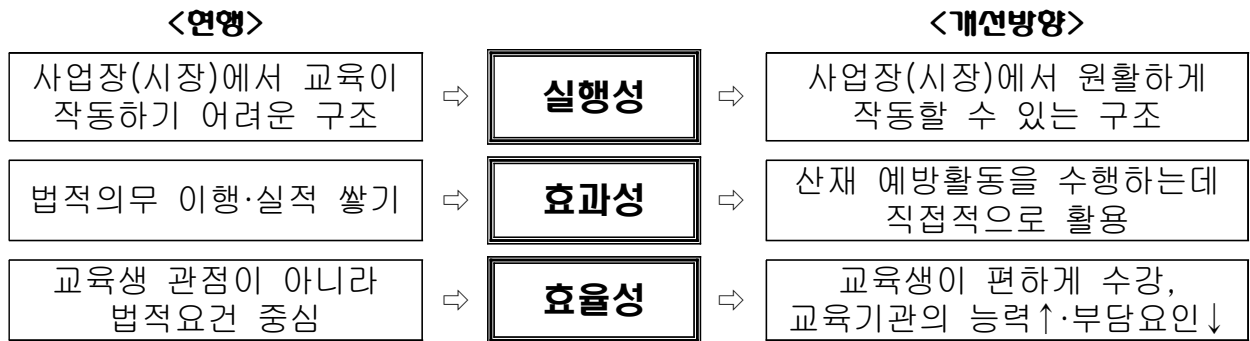
- 양질의 교육을 원하는 사업장 수요를 충족시켜 새로운 교육 수요를 창출하는 “선순환(Good Cycle) 구조” 미흡
 - 실험·실습 등 양질의 교육능력을 갖춘 민간기관 부족하여 안전 공단에 수요 집중되나 수용에 한계, 교육기관 선택 폭이 협소
 - 교육기관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대행·검사업무 등을 병행하고 있어 전문화·대형화에 한계

⑤ 사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 미흡

-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한계
 - * 위탁교육기관은 법정교육만 수행, 안전공단(교육원)이 전문화과정을 운영하나 인력·시설·장비 제한으로 수용능력·교육프로그램 다양화 한계
- 사업장 자체교육에 필요한 사진·동영상·PT 등 교육자료가 부족하고, 교육자료의 전산·정보화 체계가 미흡
- 양질의 이론 및 실습·훈련능력을 겸비한 교육강사가 부족하고 전문강사 양성시스템이 취약



□ 기본방향



1 안전보건교육 목표설정

- (총괄목표)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포괄적 목표설정
 -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·경제적 손실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사고 예방이 곧 비용절감이라는 의식 확립
 -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 인식 및 회피방법과 사업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이해시키고, 안전하고 건강한 행동습관을 유인
- (교육대상별) 대상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교육목표 설정

대상별			교 육 목 표
사업주			산업재해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교육하여 안전보건경영의 중요성을 인식
안전보건관리책임자			안전보건경영, 산재예방활동 기법의 습득 및 실천방법
안전관리자/ 보건관리자			사업주, 관리감독자,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<u>안전보건에</u> 관하여 <u>지도·조언</u> 하는데 필요한 지식 습득
관리감독자			작업장내 <u>위험요인</u> <u>발굴·개선</u> 및 <u>소속직원</u> 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하도록 <u>지휘·감독</u> 하기 위한 업무능력 배양
근로자	일반	생산직	작업장내 위험요소를 <u>작업시작 前·中·後</u> 파악*하여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 *前:작업시작 위험, 中:가동 중 위험, 後:작업 중 발생한 위험 공유 및 정리정돈
		사무직	근골, 뇌심 등 직업성질환예방·관리에 관한 지식습득
	신규채용		<u>신규직원</u> 이 작업장내 위험요인(발굴)과 재해예방방법 습득
	작업내용변경	일반직	<u>변경된 작업</u> 의 재해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 습득
		일용/ 하청(외부)	<u>당일 작업</u> 중 재해위험 요인과 안전한 작업방법 습득
특별교육			<u>작업투입 前</u> 위험확인, 조치방법, 안전작업방법 습득

② 산재취약사업장 사업주 교육 실시
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이 아닌 사업장 중 감독·조사 대상 재해 발생 사업장(집무규정 제9조, 제23조)에 대해 사업주 교육 실시
 - 재해조사 또는 감독결과 강평 때 사업주 교육용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, 안전보건 관련 설문조사 실시
 - 안전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알아야할 사항을 담은 “사업주 교육용 동영상” 자료*를 제작
- * 산재발생 현황,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및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,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및 재해발생시 처벌내용 등

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의 실효성 제고

- 경영문제 의사결정자인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준에 맞는 교육 실시
 - (신규교육) 위험관리(Risk Management)의 기본원리와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이해시키는데 중점
 - (보수교육) 안전보건경영의 여건 변화와 실제사례를 간접 체험
- 법령 등 관리책임자가 알아야할 이론적 내용은 인터넷으로 학습, 집체교육에서 안전보건경영 관련 실제사례 간접 체험

구분	현 행			개 선 방 안		
	방법	시간	내용	방법	시간	내용
신규	집체/인터넷 중 선택	6h	◆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 ◆법령 및 안전보건 조치	인터넷	3h	◆산안법 및 관리책임자 직무 ◆위험성평가 기본원리 및 적용
				집체	3h	◆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 ◆관리책임자 업무 실무매뉴얼
보수	집체/인터넷 중 선택	6h	◆안전보건정책 ◆자율안전보건관리	인터넷	2h	◆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
				집체	4h	◆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 ◆성공적인 안전보건경영 사례 ◆최근의 중대재해/감독 사례

- 연찬회·간담회 형식으로 실시, 상호간 Friend-Ship 형성 기회제공

④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의 업무연관성 제고

-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서 산재예방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게 하고
 - * 지식과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능력을 지속적으로 습득·유지할 수 있도록 실시
- '사업내 교육'에서 '직무교육'으로 변경하여 직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, 교육시간(16시간) 및 주기(연1회)는 현행 유지
- (신규교육) 재해예방의 기본원리와 관리감독자의 역할 이해, 업무수행방법 습득
- (보수교육) 새로운 예방기법, 변화된 제도·행정해석, 사고·감독사례 등 교육
- 인터넷(On-line, 이론) 학습 후 집체교육(Off-line, 실습)을 실시하여 장·단점을 보완하는 방식(BL: Blended Learning)으로 변경
 - 집체(Off-line)교육은 실험·실습, 체험, 사고사례(Near miss포함), Issue 토론을 중심으로 실시

⑤ 근로자교육의 실행가능성·실효성 제고

① 신규채용 시 교육

- 사업장의 안전보건현황 및 자신이 담당할 업무와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,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방법을 습득
-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지식, 기능, 태도 3가지를 교육
 - (지식) 신규채용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이론적 기초지식을 집체교육 전(前)까지 인터넷에서 스스로 학습(Internet learning)

- (기능) 작업 중 직면할 위험요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작업방법을 현장에서 **직상급자**에게 배움(On the job training)
 - * 직상급자는 과장·계장·주임·반장·조장 등으로서 당해 작업의 경력자를 말함
- (태도)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행동수칙을 **직상급자**로 부터 습득(On the job training)

○ 인터넷교육 선 이수(2시간) 후 집체교육(6시간)

- 집체교육 시간(6시간) 중 기능교육(3시간)은 현장에서 실시

※ 특별교육대상은 “현장교육” 제외, 7일 미만 비정규직은 “집체교육”만 실시

현 행			개 선 방 안		
방법	시간	교육내용	방법	시간	교육내용
집체 or 사내 인터넷 선택	8h	▶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 ▶작업개시 전 점검 ▶정리정돈 및 청소 ▶사고발생시 긴급조치 ▶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▶물질안전보건자료 ▶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	이론 (인터넷)	2h	▶(지식) 산업안전보건법, 안전보건 관리론, 생산설비와 공정의 일반 지식 등
			집체 교육 (현장)	6h	▶(평가) 인터넷 교육내용 평가 ▶(태도) 사업장 안전보건 현황, 작업안전수칙 준수, 작업장 정리 정돈, 비상시 조치 ▶(기능) 생산설비와 공정의 안전 작업방법, 점검방법

② 정기교육

- 교육시간은 현행과 같이 분기별 6시간을 유지하되, 현장학습(On the Job Training)과 집체교육(Off the Job Training) 중 선택
 - (현장학습) 현장부서단위의 소규모 인원으로 실시하는 “One-Point 위험예지훈련(4h)”과 집단토론(위험예지 실적, 알권리 추진현황, 사고사례, 2h)
 - ※ 위험예지훈련 교육을 받은 관리감독자가 전달교육을 통하여 훈련실시
 - ※ 교육인정시간 산출근거: 4분 /1일×20일/월×3개월÷60분/1시간= **4시간**
 - (집체교육) ①근로자 알권리 관련 현황, ②안전보건 제언, ③사고 사례에 관한 사항을 토론방식으로 실시(월 단위 분할실시 가능)

현 행			개 선 방 안		
방법	시간	교 육 내 용	방 법	시간	교 육 내 용
집체 or 사내 인터넷 선택	6h	▶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▶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▶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▶ 유해위험작업환경관리 ▶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	현장학습 & 집체교육	4h	▶ 원포인트 위험예지 훈련 ※ 매일 위험예지훈련 보고서 작성·비치
				2h	▶ 위험예지 훈련실적 및 근로자 알권리(Right-know) 관련 추진현황 ▶ 사고사례
			중 선택	집체교육 6h	▶ 근로자 알권리(Right-know) 관련 사업장내 추진현황과 질의답변 ▶ 안전보건제안(Safety & Health Proposal) 토론 ▶ 사고사례에서 얻은 교훈

*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알권리(Right to know) 관련 내용

-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의 내용 또는 결과 통지 요청(법 제11조제2항)

※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의결 사항, 안전보건관리규정 기재 사항, 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,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사항, 작업환경 측정 관련 사항, 안전·보건진단 결과,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·시행 내용

-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(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)

- ③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동의(법 제21조)

※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

- ④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및 대피(법 제26조제2항)

- ⑤ 도급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·보건 점검 참여(법 제29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)

- ⑥ 노사협의체 참여(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의4제1항)

- ⑦ 작업환경측정 시 입회 및 결과 설명회 요청(법 제42조제1항·제6항)

- ⑧ 근로자 건강진단 시 입회 및 결과 설명 요청(법 제43조제1항·제6항)

- ⑨ 역학조사 요청 및 참석(법 제43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1항·제3항)

- ⑩ 안전·보건진단 입회(법 제49조제2항)

- ⑪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의견 개진(법 제49조의2제2항)※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

- ⑫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 의견 개진(법 제50조제3항)

- 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(법 제52조제1항)

- 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신청(법 제61조의2)

③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

- 작업내용 변경에 따른 재해위험 및 예방기법으로 한정하여 현행과 같이 **2시간 교육**(집체교육 1시간, 현장학습 1시간)
 - 일용근로자는 별도 구분하지 않고, 과거 **업무수행 경험**(자격증 보유, 작업경력자 등)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**집체교육 1시간**(현장교육 면제)
 - ※ 변경된 작업이 38개 유해위험작업인 경우 제외(특별교육 대상)
 - 작업에 투입 전에 교육 완료, 반드시 집체교육 이수 후 현장학습
- 집체교육과 현장교육으로 구분 실시
 - (집체교육) 변경된 작업의 위험성과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지식을 습득시켜 자신이 직면하게 될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시킴
 - (현장교육) 안전한 작업·점검방법 등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전 수칙·비상시 대처요령 등 태도에 관한 사항을 직상급자에게 배움
 - ※ 직상급자는 과장·계장·주임·반장·조장 등으로서 당해 작업의 경력자를 말함

현행			개선방안		
방법	시간	교육내용	방법	시간	교육내용
집체 or 사내 인터넷 선택	2h (일용 1h)	▶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 ▶ 작업개시 전 점검 ▶ 정리정돈 및 청소 ▶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▶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▶ 물질안전보건자료 ▶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	집체 교육	1h	▶ (지식) 변경작업 개요, 유해위험 요인 및 안전보건상의 조치내용
			현장 학습	1h	▶ (기능) 안전 작업방법, 재해 위험요인 점검방법 ▶ (태도) 작업안전수칙 준수, 작업장 정리정돈, 비상조치

④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

- 38개 위험작업의 **작업표준**에 관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먼저 이수한 후, **현장특성 교육**을 집체교육 및 현장학습으로 이수
 - (동영상교육) 38개 표준작업을 동영상으로 제작, 해당 작업 선택이수
 - (집체교육) 현장특성을 반영, 작업개요·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교육

- (현장교육) 안전한 작업·점검방법 등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전 수칙·비상시 대처요령 등 태도에 관한 사항을 직상급자에게 배움

※ 직상급자는 과장·계장·주임·반장·조장 등으로서 당해 작업의 경력자를 말함

현행			개선방안		
방법	시간	교육내용	방법	시간	교육내용
집체 or 사내 인터넷 선택	16h (일용 2h)	▶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내용 ▶ 38개 작업별 위험 요인 및 점검방법, 등 취급방법, 유해성 등	작업표준 (동영상)	상영 시간	▶ 38개 유해위험작업 동영상 교육 자료 중 해당 작업 선택
			현 장 특 성	집체 교육	4h
현장 학습	4h	▶ (기능) 안전 작업방법, 재해 위험요인 점검방법 ▶ (태도) 작업안전수칙 준수, 작업장 정리정돈, 비상조치			

※ 민간교육기관에서 38개 작업 관련교육을 받은 경우 인정

- 교육지원센터에서 38개 작업 동영상, 강의교재/강의안 제작·보급

[6] 안전 · 보건관리자 교육의 질 향상

- 안전·보건전문가에 필요한 전문성의 지속적 유지·증진을 위해
전문가 계속교육*(Professional Continuing Education)방식으로 개선

* 지식과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전문가의 지위와 자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
교육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교육

- (신규교육) 안전관리 기본원리 및 안전관리자 역할 이해에 중점
- (보수교육) 안전 ·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흔히 직면하는
문제 및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의 해결방법 습득에 중점

* 교육 시간 · 주기는 현행과 같이 신규 34시간, 보수 24시간, 2년1회 유지

- 인터넷교육과 집체교육을 병행(BL: Blended Learning)

- (인터넷교육) 집체교육 전(前) 반드시 이수해야할 이론(지식)을 교육,
업종별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본인이 선택하여 수강
- (집체교육) 실험·실습, 체험, 사고사례(Near miss포함), Issue 토론

7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교육 자율화

- 법적 의무교육이 아닌 재해예방기관 자율교육으로 변경
 - 안전·보건대행기관 직원까지 포함하는 전문화 교육과정으로서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능력 배양

현 행	개 선 방 안
◆법적 <u>의무교육</u>으로 안전공단에서 실시 ◆전문지도기관 종사자의 건설현장 재해 예방조치 지도능력 배양 ◆법령 및 정책, 분야별 재해사례, 신공법, 안전관리기법 등(총 24시간)	◆위탁교육기관별로 <u>전문화 교육과정</u> 개발, <u>재해예방기관 자율결정</u>에 따라 선택교육 ◆재해예방기관 종사자의 사업장 컨설팅 능력 배양 ◆<u>교육시간과 내용</u>은 위탁교육기관이 재해 예방기관의 수요를 파악하여 자율 결정 ◆<u>신규자와 경력자</u>를 구분하여 <u>전문 분야별</u>로 실시하는 등 수요에 맞춰 운영

※ 대행기관 등 점검시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화교육 이수 유도

8 서비스업 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제도 도입

- 서비스업 사업장의 신규채용 근로자에게 자신의 업무와 관계된 위험 및 재해예방 방법을 교육
 - ※ 사업장의 휴·폐업이 빈번하고 근로자 이직율이 높아 **신규채용 교육** 필요
 - 신규채용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근무할 작업장에서 1시간 실습교육

방법	시간	교육내용
실습 (현장)	1h	▶(지식) 서비스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및 중대재해 사고사례 동영상 시청 ▶(태도) 작업장 안전보건 현황, 작업안전수칙 준수, 정리정돈, 비상시 조치 ▶(기능) 설비와 공정의 안전 작업방법, 점검방법

- 교육자료는 안전공단 교육지원센터에서 「서비스업 세부업종별 신규채용 근로자 표준교안」을 제작·보급

9]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프라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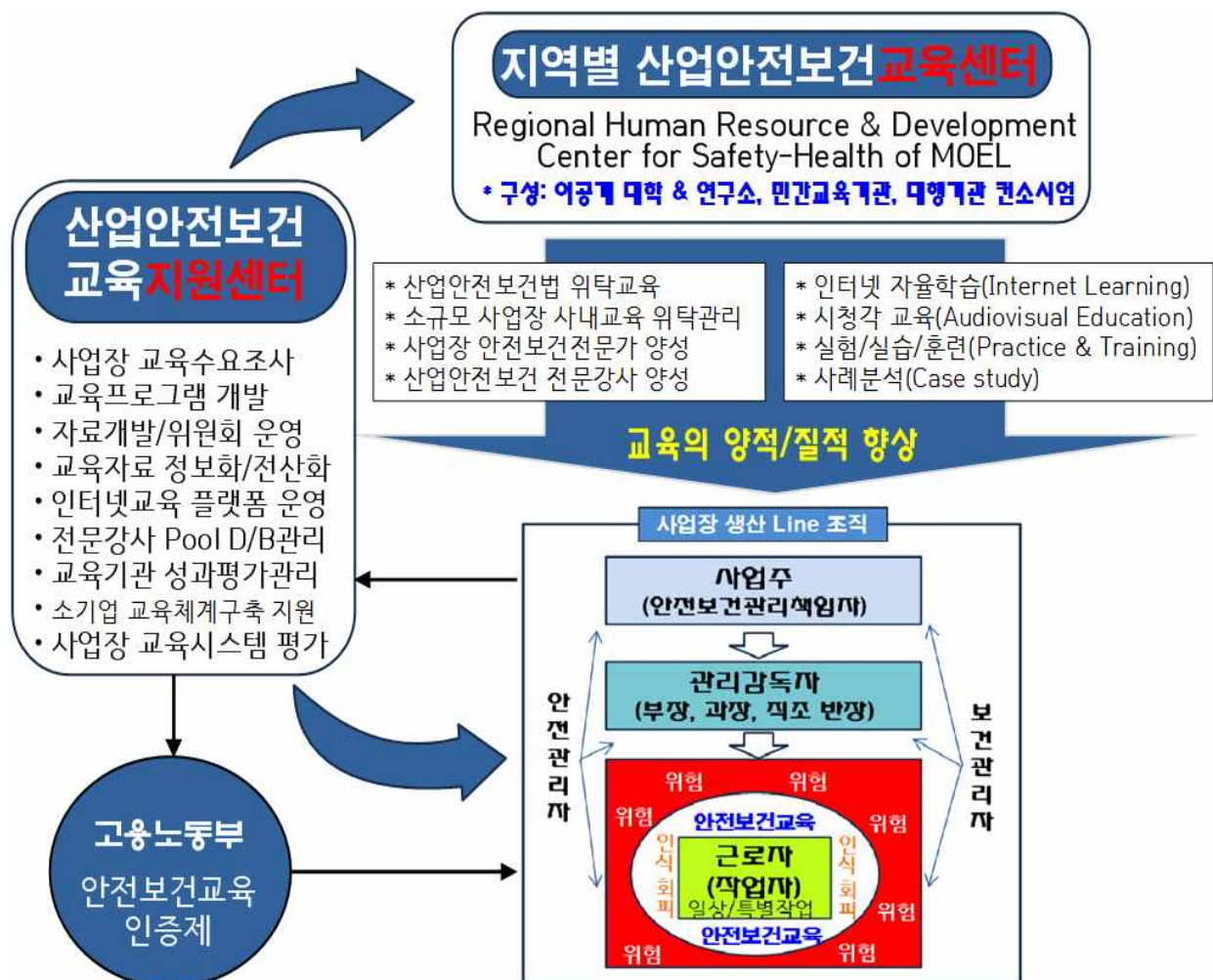
【추진방향】

◆ 교육기능과 교육지원기능 분리

- (교육기관) 실험·실습·훈련 위주의 실무형 교육기관 육성
 - * 대학·안전보건관련기관 컨소시엄, 대형화·전문화를 통한 영세성 탈피,
- (지원기관) 사업장 교육수요에 맞는 교육 지원, 성과 평가체계 구축
 - * 수요파악, 교육자료·과정 개발, 교육기관 성과·사업장교육 평가 등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수요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

◆ 사업장의 자체적인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유도

-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시스템 인증제 도입, 사업장 감독방식 개선



① 실무형 교육기관 지정 · 육성

-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실무중심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지정
 - 법정교육, 사업장 요청·자체개발 교육과정 등 운영, 교육내용·방법은 현장 적합성을 최우선 고려한 **실무형***으로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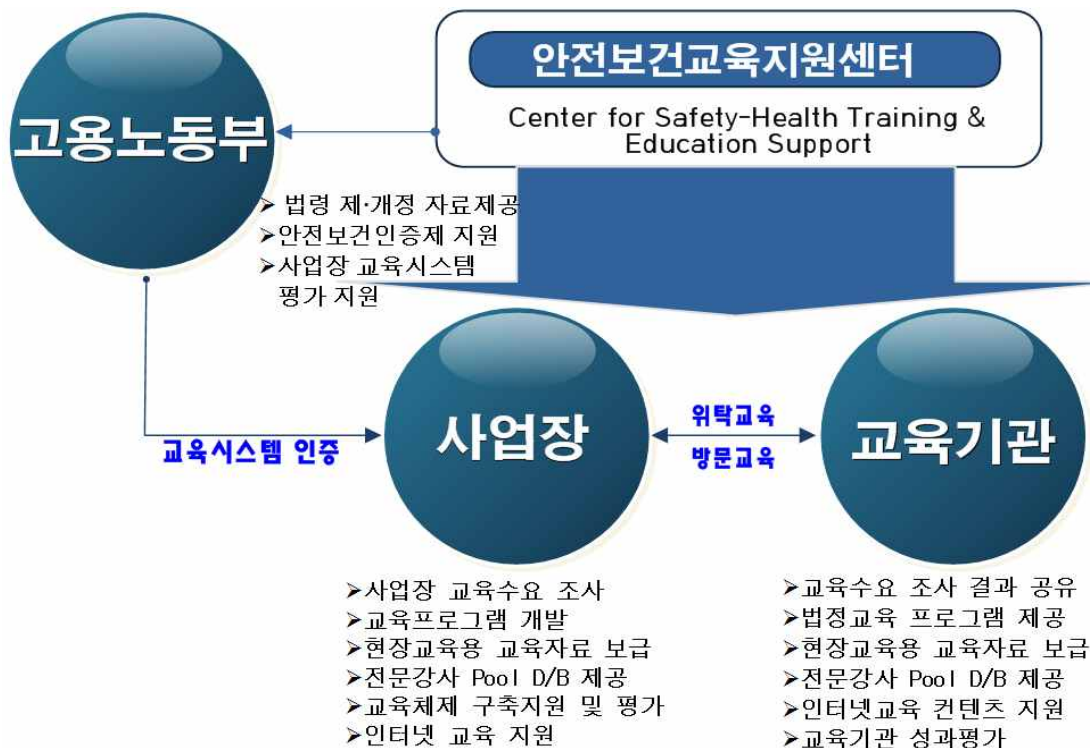
< 실무형 산업안전보건교육 기본모형 >

제1단계	제2단계	제3단계	제4단계
↓	↓	↓	↓
인터넷(이론) 자율 학습(Self-Learning)	시청각교육(Audio-Visual Education)	실험실습/훈련교육 (Practice/Training Education)	사례분석 (Case Study)

- 현장실무 교육에 필요한 인력 · 시설 · 장비를 갖춘 4년제 이공계학과 (안전보건관련학과 우선) 설치대학, 폴리텍대학 및 안전보건관련기관 등
 - ※ 기계·전기·화공·건설 분야별 실습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
 - 대학 · 연구소 및 안전보건 관련기관 등의 컨소시엄 허용

②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지원체제 구축

-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사업장 및 교육기관의 실무중심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



③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유도

- ◆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법 집행을 연계
- ◆ 자발적 참여 사업장은 감독면제·산재보험 감면, 미 참여사업장은 엄격한 법 집행 및 실효적 처벌
 - ※ 미국: OSHA 교육과정 이수 사업장 감독면제·사고시 감경, 독일: 소규모 기업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하고 실행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

가.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시스템 인증제 도입

-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체계 구축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인증서 수여
 - 인증 후 3년간 이행 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인증서 갱신여부 결정
 - ※ 단, 중대재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인증서 즉시 회수
- 인증 사업장이 무재해를 달성하거나 재해발생율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(산업재해 예방요율제 연계)

나.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감독방식 개선

-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감독을 교육일지 등 문서확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교육성과 측정방식으로 개선
-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사망재해 발생의 직접 원인인 경우 가중처벌 기준 마련
 - ※ 일본: 채용·작업변경(벌금 50만¥)·특별(6월 징역, 50만¥), 영국: 정식기소 24개월 징역(약식 12개월 이하), 2만 £ 벌금(약식기소), 독일: 25천€ 과태료(불임 3 참조)
-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주체를 사업주로 변경
 -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·보건관리자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



○ 안전보건교육제도 개선방안 시행 준비('13.2~6월)

- 실무작업반을 구성·운영('13.2~6월)하여 교육과정, 교육자료(동영상, PPT 업무매뉴얼 등) 등 마련

※ 실무작업반은 고용노동부 및 공단의 해당 분야별 담당자로 구성

○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시범 운영('13.6~12월)

- 업종별, 규모별로 시범사업장을 선정하여 개선안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시범적용하고 문제점 발굴, 개선방안 보완
- 안전보건관련학과 설치대학 중에서 실무형 교육운영 시범대학을 선정, 시범운영 실시

○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('13.6~9월)

- 개정안 완료('14년 상반기) 및 시행('14년 하반기)

* 교육기관 및 사업장의 여건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경 가능